

## Review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Basic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on-Hyun Kwon\*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epart. of Police Administration),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reference materials for the direction of AI policy, enforcement ordinance, individual laws to be enacted in the future, and the possibility of revision by examining the Basic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The term 'high-impact AI' needs to be changed to 'high-risk AI', and the 11th content in the list order in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Act needs to additionally stipulate the part 'possible to cause danger'. The 'generative AI' part needs to be supplemented with provisions to ensure its transparency and safety. The 'AI promotion organization' part needs provisions for organizations such as task forces. The 'AI business operator' part needs to be separately stipulated by distinguishing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AI development business operators and AI utilization business operators. The 'penalty provisions' part needs to have step-by-step regulations according to reasonable responsibilities. In conclusion, these contents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Basic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law, Basic Artificial Intelligence Act,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 [요 약]

본 논문은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하여 문헌조사방법에 따라 검토하여, 인공지능정책의 방향, 시행령, 향후 제정될 개별법과 개정가능성에 대하여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보다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고 법 제2조 4호에서 나열순서로 11번째 내용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부분은 그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앞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추진 기구' 부분은 테스크 포스(task force) 같은 기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사업자' 부분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벌칙 규정' 부분은 합리적인 책임에 따른 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인공지능기본법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인공지능, 인공지능법, 인공지능기본법,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 
- First Author: Soon-Hyun Kwon, Corresponding Author: Soon-Hyun Kwon
  - \*Soon-Hyun Kwon (Ksnyunok@naver.com),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epart. of Police Administration), Silla University
  - Received: 2025. 05. 02, Revised: 2025. 05. 15, Accepted: 2025. 05. 21.

## I. Introduction

인공지능이 대중에게 관심 대상이 된 사건으로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였다. 알파고가 인간에게 승리하여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후 2022년 챗 GPT(ChatGPT)의 등장으로 일상생활 까지 많은 파급력을 주었다. 2024년에는 딥페이크(deep fake)를 이용한 범죄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게 되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제한의 요구가 등장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제한의 출발은 헌법적 검토 및 논의가 필수적인데, 그 다음으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sup>1)</sup> 빅데이터의 이용에는 늘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보호와 평등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인공지능의 시대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침해의 현실가능성과 자주 발생됨으로 인하여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sup>2)</sup> 행정 및 공공법제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먼저 전자정부 활용에 있어서 과거에는 단순한 정보의 교환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접적인 행정행위를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시기에 유럽은 2024년 8월에 EU AI법(EU AI Act)을 발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인공지능이 문제되는 개별법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이 있었는데, 기본법으로 「AI 기본법」이 2025. 1. 21. 제정되었고, 2026. 1. 22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 II. Review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Basic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 1. Comparison of the European Union's Artificial Intelligence Law and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Law

표1에서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한국의 인공지능법의 법체계를 비교하였다. 인공지능의 법체계 비교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용인할 수 없는(unacceptable) 위험의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낮은 위험 인공지능, 미소(minimal) 위험 인공지능의 4단계로 구별하고 단계별로 차등화된 제한을 요구한다. 한편 한국은 입법 과정에서 ‘금지된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정되어진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만을 규정하지 영향의 단계에 따른 다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sup>4)</sup>

### 2. Review and improvement of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law

#### 2.1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 2.1.1 Definition of Regulations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Act)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인공지능에 대하여 차등화 되어진 제한을 요구한다.<sup>5)</sup>

우리나라는 ‘고영향 인공지능’ 대하여 정의 규정(법 제2조)을 두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법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법 제35조)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사용하는 ‘고영향 인공지능’은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위험’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의미를 줄이고 산업에 가해지는 중요성을 참작하여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하자는 취지의 ‘이해민 의견안’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sup>6)</sup> ‘고영향’이라는

1) 박혜란,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권 침해 대응 방안 연구”, 성균관법학 제36권 제3호, 61쪽, 9. 2024.

2) 김광수, “인공지능 규제의 법체계”, 토지공법연구 제93집, 228쪽, 2. 2021,

3)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과 IT법체계”,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1호, 60쪽, 5. 2018.

4) 정찬모,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의 검토와 향후 과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89-90쪽, 3. 2025.

5) 정찬모, 앞의 논문, 88쪽.

6) 강지원, “AI기본법안과 ‘제3의길’ : 진흥과 규제사이”, 언론중재 제173권, 67쪽.

Table 1. Comparison of legal systems

European Union Artificial Intelligence Law	Kor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Article 2 (Scope) Article 3 (Definition) Article 4 (AI Literacy)	Article 1 (Purpose) Article 2 (Definition) Article 3 (Basic Princip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Chapter 2 Prohibite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hapter 7 Governance	Chapter 2 Promotion System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eation of a Trust-Based Foundation
	Chapter 3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romotion
	Section 1 Establish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Base Article 13 (Support for the Development and Saf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ticle 14 (Standard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ticle 15 (Establishment of Measur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etc.)
Chapter 6 Innovation Support Measures Articles 57-59 (Regulatory Sandbox) Articles 60-61 (High-Risk AI Testing in Real-World Conditions) Articles 62-63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ection 2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ctiv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rticle 16 (Support for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ticle 17 (Special Support for SMEs, etc.) Article 18 (Activation of Startups) Article 19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Article 20 (Institutional Improvement, etc.) Article 21 (Securing Professional Manpower) Article 22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try into Overseas Markets) Article 23 (Desig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plex, etc.) Article 24 (Establish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Verification Base, etc.) Article 25 (Promotion of Measur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 etc.) Article 26 (Establishment of the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Promotion Association)
Chapter 3 High-Risk AI Systems	Chapter 4: Ethics and Re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ction 1 (High-Risk AI Classification Rules) Section 2 (Requirements for High-Risk AI) Section 3 (Obligations of High-Risk AI Providers) Section 4 (Notification Agencies) Section 5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ion, Registration) Chapter 4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Providers and Distributors of Specific AI Systems Chapter 5 General-Purpose AI Model Section 1 (Classification Rules) Section 2 (Obligations of General-Purpose AI Providers) Section 3 (Obligations of General-Purpose AI Providers with Systemic Risk) Section 4 (Code of Conduct) Chapter 10 Code of Conduct and Guidelines	Article 27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Principles, etc.) Article 28 (Establishment of Private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ommittee, etc.) Article 29 (Establishment of Measures for Building a Trust-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30 (Suppor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Reliability, Certification, etc.) Article 31 (Obligation to Ensure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32 (Obligation to Ensure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33 (Confirmation of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34 (Obligations of Business Operators Related to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35 (Artificial Intelligence Impact Assessment) Article 36 (Designation of Domestic Agent)
	Chapter 5 Miscellaneous Provisions
Chapter 9 Post-monitoring, information sharing, market Supervision Chapter 12 Penalties	Article 37 (Expans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mo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etc.) Article 38 (Survey of actual conditions, compilation of statistics and indicators) Article 39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work) Article 40 (Fact-finding, etc.) Article 41 (Application of penalties to public officials) Article 42 (Penalties) Article 43 (Fines)
Chapter 13 Final Provisions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1 (Enforcement Date) Article 2 (Preparatory Act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rticle 3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Dedicated Agencies)
Appendix	

단어의 의미에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영향’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로서 명확성 원칙<sup>7)</sup>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고위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sup>8)</sup> 또한 법 제2조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부분 역시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영역’이라는 부분도 고위험 인공지능의 분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사용되는 목적과 양태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진다<sup>9)</sup>는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법 제2조 4호에서 나열순서에서 11번째로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4조 2호 본문에 나오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문장이 생략되어있다.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법 제2조 4호 본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11번째 의미상으로 파악하면 입법적 불비로 보여서 조문의 체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부분이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 제2조 4호에서 영역별로 10가지를 나열하고 11번째에서 시행령을 통해 추가로 규정할 수 있게 하여 결국은 시행령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부가 중요해 질 수 있다고 본다. 고영향 AI의 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AI 기본법에서 말하는 고영향 AI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고영향 AI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형별로 나누어 규제하거나 산업별 특성에 맞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법 제2조 4호 정의 규정에서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 33조 제1항에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법 35조에서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다. 법 33조 제2항 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지 불확실하게 보이고 정부의 판단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 35조는 지나친 중복 규정이거나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인다.

### 2.1.2 Other regulations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인증 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30조 제3항). 국가기관 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법 30조 제4항).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안 중에는 검·인증을 의무화하는 안<sup>10)</sup>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는 사전 검·인증이 권장사항이 되고(동조 제3항), 공공조달에 있어서는 검·인증을 받은 인공지능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다(동조 제4항).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진흥을 고려하여 검·인증을 의무 사항으로 하지 않고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국가기관이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하는 완화된 규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 2.2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유럽연합법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용어에 대해 개념 정의하지 않으면서 범용인공지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적인 형식으로 예를 드는데 반하여 미국 2023년 행정 명령은 적극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파생된 합성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하여 입력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학습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유형을 말한다. 이에 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및 그 밖의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정의한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이 정의를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안에는 생성형

7) 현재 2005. 6. 30. 2002헌바83. 참조.

8) 정찬모, 앞의 논문, 76-77쪽. 참조.

9) 김광수,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을 위한 법제 동향 - 미국과 EU 인공지능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70호, 188-189쪽, 3, 2023.

10) 권철승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399, 제19조, 7, 2024.

AI에 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AI가 제작한 콘텐츠임을 알리고, 불법적인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도록 모델을 설계하고, 훈련에 사용되는 저작권 데이터에 대하여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내용이 관련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정치·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 것이다.<sup>12)</sup>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정의 규정<sup>13)</sup>(법 제2조 제5호)과 사전고지의무(법 제31조 제1항)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됨에 대해 사실 표시의무(법 제31조 제2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법43조 제1항).

인공지능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별도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하여 투명성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sup>14)</sup>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최근의 딥페이크(deep fake)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간 963명을 검거하였는데 70%가 10대였다.<sup>15)</sup> 청소년에 대한 위험은 물론이고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sup>16)</sup> 물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하여 개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생성·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대중의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표시 또는 고지를 사회문화적 예절로 정착시키도록 하고, 법적 의무 부과 대상은 위험성이 높은 콘텐츠에 한정함이 적절할 것이다.<sup>17)</sup>

### 2.3 Artificial Intelligence Promotion Agency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법 제11조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둘 수 있고 법 제12조에 따라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둘 수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게 되어 있다. 나머지 인공지능정책센터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임의 기구로 되어 있다.

법에서 각 기구에 대한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호 기구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데 인공지능정책센터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의 긴밀한 연계관계와 각 기구의 구성원간의 일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의 협조관계나 정보공유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무조정과 부처 간 협의가 원활치 않고 아직 주무관청에 비해 다른 부처들의 AI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다.<sup>18)</sup> 정부 부처의 조직이기주의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목표한 특정 문제의 연구나 해결을 위해 부서 관계자들 중 일부 인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맡은 임무를 다하고, 성과를 달성한 후 해체되는 조직인 테스크 포스(task force) 같은 기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 2.4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법 규정에는 인공지능사업자라는 규정으로 등장하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명칭으로 등장하는 규정은 없다.

법 규정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간에 책임과 의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구별 없이 규정되어서 앞으로 필요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구별하여 별도로 규

11) 정찬모, 앞의 논문, 77-78쪽.

12) 김현정,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중국의 규제 및 주요이슈에 관한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32집 1호, 71쪽, 2. 2024.

13) 정찬모, 앞의 논문, 77-78쪽. 참조.

14) 상세한 내용은 박상철, 앞의 논문, 41-42쪽 참조.

15) 조선일보, 2025.04.17. 입력.

16) 서울경제, 2025.04.16. 입력.

17) 정찬모, 앞의 논문, 83-84쪽; 유사한 논지로는 박준우, “인공지능(AI)딥페이크 생성물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연구”, 산업재산권 제79호, 한국지식재산학회, 341-347쪽, 2024.

18) 박상철,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전 개정 필요성 - 규제 조항의 체계·축조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28권 제3호, 20-21쪽.

정될 필요가 있다.

법 제4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고 법 제43조에 따른 벌칙 대상은 해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중지나 시정 명령이 가능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므로 일반인 내지 경쟁사의 신고나 민원이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시행령 등에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5 Regulatory method

일반적으로 제한 문제는 각 나라의 역사적, 제도적, 사회적 환경과 기술의 발전 단계, 산업 시장의 현황, 정치적 배경 등으로 이루어진 맥락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sup>19)</sup>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하여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는 행정적 규제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시각이다. 둘째는 기술과 그 상업적 이용은 어쨌든 빈틈을 찾아서 확산되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관점이다.<sup>20)</sup>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방법으로 기본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방법과 필요한 분야에 개별법을 만들어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법으로는 EU에서 AI기본법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이 해당된다. 그 외 개별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이 해당된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법 형식을 택하였고 이미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므로 그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 방식을 택하더라도 기본법에 어떠한 내용과 규제가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특별법으로 규제하자는 주장이 있다.<sup>21)</sup>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원칙과 방향은 물론이고 책임과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있다. 이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기본법 차원에서 필요한 의무와 규제 내용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의 내용을 보면 산업 육성을 중요시하여 규정한 법과 국민의 안전과 신뢰확보를 위하여 규제를 강조하는 법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전자로는 미국의 입법 형식으로 볼 수 있고 후자로는 EU의 AI기본법이 해당한다 하겠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주로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치중한 법이 존재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산업 육성보다는 강한 규제를 강조하는 법으로 존재한다고 본다.<sup>22)</sup>

유럽의회는 위험 수준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위험이 큰 시스템과 그렇지 아니한 시스템의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고위험 시스템에는 의무보험과 결합된 위험책임을 적용하고, 기타 시스템에는 유책사유가 추정되는 과실책임 적용하며 위험에 따라 상이한 책임규칙을 적용한다. 즉, 규제의 강도와 책임의 엄격성은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을 기반으로 한다(위험기반 접근방식). 따라서 위험이 클수록 책임이 엄격해진다. 이 점에서 위험기반 접근방식은 비례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며, 과잉규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이러한 위험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인공지능기본법에는 기본적인 규제와 원칙을 규정하고, 필요한 산업분야별로 개별법을 두어서 규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 육성을 더 중요시하면서 포괄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하려는 입법의 태도로 보여진다. 필자는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규정을 보완하면서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책임에 따라 단계적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육성과 규제를 상호 대립되는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조화로운 관계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를 약하게 한다고 하여 장기적으로 그 산업이 육성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받으며 산업이 이루어져야 국

19) 윤혜선,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8쪽, 2019,

20) Karen Yeung and Martin Lodge, Algorithmic Regulation: An Introduction, in: Karen Yeung / Martin Lodge, Algorithmic Regulation, Oxford, p.7, 2019.

21) 류정희, “AI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법적 수용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쪽, 12, 2021.

22) 박혜란, 앞의 논문, 75쪽. 참조.

23) 류정희, 앞의 논문, 105쪽.

민의 안정성과 신뢰가 확보되어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6 Penalty provisions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8조에서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신뢰성 보장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일정 부분 민간의 자율규제 영역에 맡겨 놓은 점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여 「EU AI법」과 차별화를 도모한 부분으로 보인다.<sup>24)</sup>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되므로 이런 규정(법 제28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 법의 제정으로 규제가 증가해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었다. 이 법에서는 벌칙에 대하여 제42조(벌칙)과 제43조(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교적 처벌 수위가 약하게 보인다.

법 제40조(사실조사 등) 제3항에 따른 중징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43조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법률상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의 범위 및 의무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어 벌칙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상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의 인공지능을 사용한 자에게는 3,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이, 고위험·낮은 위험 인공지능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의 3%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sup>25)</sup>

## III. Conclusion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류에게 많은 장점을 주지만 또한 기본권과 안정성·신뢰성에 있어서 많은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머신러닝(기계학습)과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직업 분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사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sup>26)</sup> 법원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sup>27)</sup>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대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입법이 되기보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제정되어서 입법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본 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그 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주요한 개념인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를 중심으로 한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적용 범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현실적 위험성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인공지능정책센터 그리고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상호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하여 테스크 포스 같은 기구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의무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일반인 내지 경쟁사의 신고나 민원이 남용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에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법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하여 인공지능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단점을 최소화하는 조화로운 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Cho So-young,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basic rights system and guarantee content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Dong-A Law』 Vol. 94, p. 12, 2022, 10.31839/DALR.2022.02.94.1
- [2] Jeong Chan-mo, "Review of the main contents of the Basic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uture tasks," Inha University 『Law

24) 강지원, 앞의 논문, 70쪽 참조.

25) 정찬모, 앞의 논문, 87쪽.

26) 박기주, "인공지능 시대, 사법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체계의 법적 기초 연구", 사법 제1권 제59호, 587쪽, 2022,

27) 조소영,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기본권체계 및 보장내용의 변화 가능성 검토", 동아법학 제94호, 12쪽, 2022,

- Research』 Vol. 28 No. 1 (2025.3), p. 76-90, 10.22789/IHLR.2025.3.28.1.3
- [3] Karen Yeung and Martin Lodge, Algorithmic Regulation: An Introduction, in: Karen Yeung / Martin Lodge, Algorithmic Regulation, Oxford, p.7, 2019
- [4] Kang Ji-won, "AI Basic Law and the 'Third Way':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Media Arbitration』, p. 67-70, 2024
- [5] Kim Gwang-su, "Legal System for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nd Law Research』 Vol. 93 (2021.2), p. 228, 10.30933/KPLLR.2021.93.217
- [6] Kim Gwang-su, "Legal Trends for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 Focusing on Comparison of US and EU Artificial Intelligence Laws -", 『Administrative Law Research』 Vol. 70, pp. 188-189, 3. 2023, 10.35979/ALJ.2023.03.70.173
- [7] Park Hye-ran, "A Study on Countermeasures to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ungkyunkwan Law Review, Vol. 36, No. 3 (2024.9), p. 61, 10.17008/sklr.2024.36.3.002
- [8] Park Jun-woo, "A Study on Publicity Rights Vio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Deepfake Creations," Industrial Property Rights No. 79,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pp. 341-347, 2024, 10.36669/ip.2024.79.7
- [9] Park Ki-joo, "A Study on the Legal Basis of the Social Value Realization System of the Judicial System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udicial』 Vol. 1, No. 59, p. 587, 2022, 10.22825/juris.2022.1.59.014
- [10] Park Sang-cheol, "Need for revision befor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ing on problems in the structure and construction of regulatory provisions -", 『Information Law』 Vol. 28 No. 3, pp. 20-21, 10.22846/kafil.28.3.202412.001
- [11] Ryu Jeong-hee, "A Study on the National Regulation and Legal Acceptance of A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 105, 201, 12. 2021
- [12] Sim Woo-m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T Law System," 『Northeast Asian Law Studies』 Vol. 12 No. 1 (May 2018), p. 60, 10.19035/nal.2018.12.1.3
- [13] Yoon Hye-seon, "A Study on the Regulatory Poli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Regulatory Policy Cases of Major Countries,"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Vol. 26, No. 4,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p. 138, 2019
- [14] Representative Kwon Chil-seung's proposed bill, "Bill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ill No. 2201399, Article 19, No. 7, 2024
- [15] Constitutional Court 2005. 6. 30. 2002HunBa83
- [16] Seoul Economic Daily, entered on 2025.04.16
- [17] Chosun Ilbo, entered on 2025.04.17.

## Authors



Soon-Hyun Kwon received his Ph.D. (Constitutional Law) from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in Korea in February 2012. Dr. Kwon became a professor at Silla University in 2014.

He is interested in the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He previously served 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and is currently an auditor of the Korean ESG Association.